

생명공학연구센터 운영세칙

제정 2001. 6. 1 개정 2006. 9. 1
개정 2002. 1. 1 개정 2013. 8.23
개정 2002. 9. 1 개정 2020. 8.2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부설 생명공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센터의 정식 명칭은 “생명공학연구센터(POSTECH Biotech Center, PBC)”이라 한다.

제3조(설립목적) 센터의 설립목적은 대학의 생명공학분야 우수인력 및 연구 잠재력과 포스코(POSCO) 등 참여 기관들과의 산학 협동 체제를 바탕으로 첨단 생명공학 연구를 수행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국가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하는 것이다.

제4조(조직) 센터의 조직은 별지 서식 1과 같다.

제5조(센터장)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조직) 센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 팀 등의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 조직의 장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구성원) ① 센터에는 운영 목적에 따라 참여교수, 연구원, 행정원, 기능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배정된 공간에 입주를 희망하는 특수실험실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추천서와 기여도를 평가하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5~7명 내외로 구성한다. 주요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센터의 운영세칙(지침 제외)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3. 센터 사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여하는 사항
- ③위원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준용기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개정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8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1) 조직도

